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청서류, 방식 관련 법령안 개정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1항)

- 1) 신청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제출하는 서류가 다소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신청 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제출서류 항목의 내용을 보완함.

나. 특별진급 신청서 서식 보완(별지 제1호)

- 1) 신분증 사본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서명란의 가독성을 증대하여 신청 시 편의성 증대
- 2) 국립묘지 안장자 대상으로 안내하는 묘비(명패) 계급변경 신청란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립묘지 안장 신청과의 혼동 방지
- 3)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 따라 신청 시 제출서류 내용 보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보훈부,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31. ~ 12. 1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족이”를 “가족이 대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진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특별진급 신청대상자	성명(한글)	생년월일	
	* 신분증 사본 미제출 희망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군번		
국립묘지 안장자 대상 요비(명패) 계급 변경(신청, 미신청, 해당 없음 중 선택)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진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2.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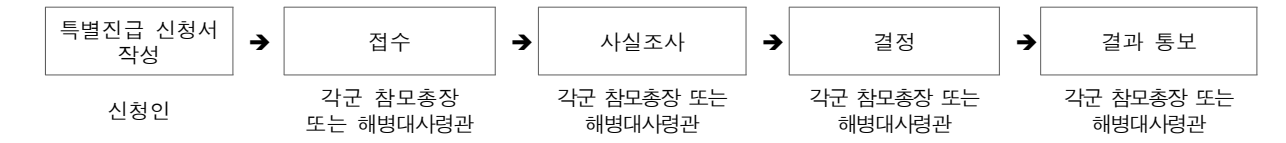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군인, 군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군인, 군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별진급 신청) ① 법 제6 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 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 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 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특별진급 신청) ① ----- ----- ----- ----- ----- ----- ----- ----- ----- ----- ----.
1.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u>특별진급 대상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로 한 정한다)</u>	1. ----- ----- <u>주민등록증 또 는 신분증</u>
2. <u>유족이</u>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u>제1호의 서류</u>	2. <u>가족이 대리</u> ----- ----- 가. <u>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로 신청대 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 본)</u>
나.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u>	나. <u>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u>

<u>하는 서류</u>	<u>자료</u>
1) <u>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u>	
2) <u>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8